

대전지방법원 2021. 6. 16 선고 2020나10460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중중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

피고, 항소인 1. K

2. L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

변 론 종 결 2021. 5. 26.

판 결 선 고 2021. 6. 16.

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1. 8. 선고 2018가단2611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Z 임야 10,909㎡(이하 ‘이 사건 임야’라 한다) 중 별지 표 ‘공유지분’란 기재 피고들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2014. 12. 29.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항소취지

주문 제1, 2항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AA씨 21세손 ‘AB’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.

나. 1968. 3. 7. 이 사건 임야 중 각 1/5지분에 관하여 피고 K과 AC, AD, AE, AF(AG생, 이하 “망 AF”이라 하고, 위 사람들을 통칭하는 경우 ‘피고 K 등’이라 한다)이 1968. 2. 20.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피고 K을 제외한 다른 소유명의자들은 모두 사망하였고, 피고 L은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의해 AD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을 단독 상속받았다. 다른 소유명의자들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받은 지분은 별지 표와 같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1, 2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(제2항)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, 피고들 외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)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의 요지

원고는 1968. 3. 7.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 K 등에게 각 1/5 지분씩 명의신탁 하였다. 이후 원고는 2014. 11. 29.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결의하였으므로, 명의수탁자인 피고 K와 AD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L은 같은 날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임야에 관한 각 1/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,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,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,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,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,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,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, 분묘 수호와 봉제사의 실태,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,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 관계,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,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,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(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9다9523 판결,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).

2) 피고 K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당시 원고가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 실제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 2, 6, 12, 35호증, 을 제1, 8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, 1968. 3. 7. 당시 'AB'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원고가 실제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① 이 사건 임야 중 각 1/5 지분에 관하여 피고 K 등 5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는 1968. 3. 7.이다.

② 그런데 원고는 2011. 11. 4.경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등록하고, 2011. 11. 5.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 제정을 의결하였는데,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- 이번에 A 종중 종친회를 설립하려 합니다.

- 종친회를 설립하는 이유는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고, 종중재산을 팔라고 우리한테 재판을 걸어오면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려고 종친회를 설립하는 것이다.

- AS(AA 씨 22세손으로 AB의 아들이자 AL의 동생) 계열 종원들은 따로 만나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 결의한 내용에 따르기로 하였다.

- AB 종중은 A 종중(원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, 이하 같다)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고 따로 따로 하는 건 옳지 않다. AB 종중으로 AY이 회장으로 있던 거는 회장님 직권으로 여기 A 종중으로 통합해 달라고 하라.

- 종중은 시제 지내는 게 우선이므로 시제 주관은 분명히 A 종중에서 해야 한다. 특별히 시제는 매년 음력 10. 13. 직전 토요일에 지내는 것이 맞다.

③ 위 임시총회 개최 이전 원고가 주체가 되어 AB 및 그들의 후손에 대한 시제를 지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, 원고 스스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.

④ 이 사건 임야 외에도 천안시 AO 일대에 AA씨들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수 필지 존재하고, AA씨 26세손 'AR'을 중시조로 하는 'AU'가 2008년경부터 그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임을 주장하며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, AU에 속하지 않은 AA씨 후손들이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그 토지의 명의자들의 공동선조에 해당하는 'AB'를 중시조로 하여 위 임시총회 개최에 즈음하여 비로소 원고를 조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

⑤ 'AB'와 그의 아들인 'AL'(AA씨 22세손), AL의 아들인 'AM'(AA씨 23세손)의 분묘는 이 사건 임야가 아닌 천안시 서북구 AZ 임야에, 'AR'과 'AQ'(AR과 형제지간으로 AA씨 26세손)의 분묘는 BA 임야에 각 존재하고,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 종중과 관련된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.

⑥ 다만 이 사건 임야에는 'AB', 'AL', 'AM'의 처 AN의 효성을 기리기 위한 'AK'이 존재하나, 원고가 1968년경 위 효자문을 관리하여 왔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(오히려 위 효자문은 천안시 BB 일대에 살고 있는 AA씨 후손들이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, 그들이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라고

인정할 증거는 없다).

3)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K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가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,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필증 등 통상적으로 실제 소유자가 소지하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, 위 임야가 원고의 소유로 된 과정과 이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수령 및 지출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, 오히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피고 K 등이나 그의 상속인들이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나경선, 판사 박세진, 판사 강지엽

별지

순번	피고	등기명의자와의 관계	상속분	공유지분
1	B	AC(2013. 7. 26. 사망)의 상속인(D, E, F, G은 AW의 대습상속)	27/117	27/585
2	C		18/117	18/585
3	D		6/117	6/585
4	E		4/117	4/585
5	F		4/117	4/585
6	G		4/117	4/585
7	H		18/117	18/585
8	I		18/117	18/585
9	J		18/117	18/585
10	K	본인	-	1/5
11	L	AD(1985. 11. 9. 사망)의 상속인 (협의분할에 의하여 전부 상속)	1/5	1/5
12	M	AE(2000. 2. 23. 사망)의 상속인(O, P, Q, R는 AX의 대습상속)	12/60	12/300
13	N		8/60	8/300
14	O		2/60	2/300
15	P		2/60	2/300
16	Q		2/60	2/300
17	R		2/60	2/300
18	S		8/60	8/300
19	T		8/60	8/300
20	U		8/60	8/300
21	V		8/60	8/300
22	W	AF(1996. 12. 21. 사망)의 상속인	1/3	1/15
23	X		1/3	1/15
24	Y		1/3	1/15